

2022년 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결과 주요 Q&A

의결

1. 노후빌딩 환경개선 공사 추진

2023년 1분기부터

Q2-1. 해당 사업으로 개선되는 사항은 무엇인지?

- A2-1. ▪ 노후화 빌딩을 대상으로 ① 통합사무실, 통합회의실 등 집중 업무공간 구축
② 노후시설 대개체(냉난방기/소방시설 등) ③ 복지공간(샤워실, 체력단련실 등) 및 외부환경(조경, 외벽 등)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Q2-2.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가?

- A2-2. ▪ 운용센터 및 지사, 지점급을 대상으로 통신등급,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겠으며, '23년 1분기 내 현장실사 후 규모 및 추진 대상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.

*'23년 대상빌딩 후보 : 수원/원주/덕진/양재 빌딩 중 현장상황/ 노후도/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

의결

2.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

2023년 1분기내

Q3-1.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
- A3-1. ▪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('22.7.12 시행)에 따라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며,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(~'23.7.11) 도입을 해야 합니다.
-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면, 퇴직연금 상품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한 상품운용 공백/방치 시에도 사전 지정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/운용되어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합니다.
- 또한,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들로 승인될 예정이므로, 퇴직연금 운용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수익률 제고가 가능합니다.

Q3-2. 확정기여형(DC)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필수로 지정해야 하는가?

A3-2. ▪ 법적 의무사항이므로, 디폴트옵션 상품 1개를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.

Q3-3. 사전지정운동제도(디폴트옵션)는 어떻게 운영/적용되는가?

- 기존 운용상품 만기일(D-Day)로부터 6주 경과시까지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운용 됩니다.
- A3-3**
- (D+4주) 기존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 후 4주 이내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, 운용상품 미지정 및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예정됨을 통지
 - (D+6주) 통지 이후 2주 이내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, 디폴트옵션 상품 자동 운용